

정보통신대학원내규

제1장 총 칙

- 제 1 조 (목적) 본 내규는 경희대학교대학원학칙 및 경희대학교 대학원학칙시행 세칙에 의거하여 정보통신대학원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2 조 (학위과정) 본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, 박사학위과정을 둔다.
- 제 3 조 (학과·계열 및 입학정원) ① 본 대학원에 정보통신망 관리공학과, 전파통신·방송시스템 공학과, 멀티미디어시스템공학과를 둔다.
② 입학정원은 석사학위과정 0명, 박사학위과정 0명으로 한다.
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대학원에 입학, 편입학, 또는 재입학하는 인원은 정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
1.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
2.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
3.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

제2장 입 학

- 제 4 조 (입학전형 횟수 및 시기) 본 대학원의 입학 시기는 매학기 초 30일 이내로 하며, 입학전형은 정시전형과 정시전형 이후 결원에 대해 수시로 선발하는 수시전형에 의한다.
- 제 5 조 (입학자격) ① 본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입학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. 1. 국내·외 4년제 대학(교)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 또는 학사학위 취득 예정자 2.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
② 본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에 입학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.
1. 국내·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
2.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
- 제 6 조 (입학전형위원회) ① 본 대학원 입학업무에 공정성을 기하고, 또한 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입학전형위원회를 둔다.
② 입학전형위원회는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제 7 조 (입학전형방법)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 방법은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으로 한다.
1. 서류심사 : 대학 및 대학원 전학년 성적, 자기소개, 연구수행 계획, 연구실적, 프로젝트 수행경험 또는 창업계획, 어학능력에 대한 심사
 2. 면접시험 : 인성 및 태도, 발전가능성에 대한 심사
- 제 8 조 (입학전형 지원구비서류 등) 본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에 입학을 지원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학원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1. 입학원서(명함·판사진3매 포함)
 2. 학사 또는 석사 학위수여증명서 또는 학위 수여예정증명서
 3. 대학 및 대학원 전학년 성적증명서
 4. 자기소개서
 5. 연구수행 계획서 (박사과정에 한함)
 6. 연구실적물 각 1부 (해당자에 한함)
 7. 프로젝트 수행 경험 또는 창업계획서 (해당자에 한함)
 8. 어학능력 증명서 (해당자에 한함)

- 제 9 조 (전과) ① 본 대학원 내에서 학과 또는 전공의 통폐합이 있을 경우에는 전과를 할 수 있다.
 ② 제1항에 의하여 전과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전과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.
- 제 10조 (편입학 및 재입학) ① 본 대학원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
 ② 본 대학원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 퇴학 또는 제적된 학생에게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
 ③ 본 대학원의 재학생중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편입학을 희망할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희망하는 대학원의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
- 제 11조 (등록) ① 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정해진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금 및 등록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.
 ② 재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.
 ③ 수업 연한 내에 수료학점을 이수하지 못하여 다음 학기에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1.4학점 미만 : 등록금의 2분의 1

2.4학점 이상 : 등록금 전액

제3장 수업·학점 및 성적

- 제 12조 (수업연한) ① 본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 이상으로 한다.
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본 대학원의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을 각각 6개월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.
- 제 13조 (재학연한) 본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석사학위과정 5년, 박사학위과정 8년으로 한다. 다만 군입대로 인한 휴학과 해외파견 및 유학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.
- 제 14조 (수업) ① 본 대학원의 강의, 연구실습 및 시험 등은 각 과정 및 전공별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② 본 대학원장은 다른 대학원과의 협의를 통하여 교과목을 공동으로 개설할 수 있다.
 ③ 본 대학원은 사이버(CYBER) 강의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제 15조 (이수과목 및 취득학점) ① 본 대학원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과목은 본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전공별 교과과정에 따르며 석사과정 수료 최저학점은 24학점, 박사과정 수료 최저학점은 36학점으로 한다. 단, 본 대학원에서 인정하는 연구수련학점은 석사과정은 6학점, 박사과정은 9학점까지 인정한다.
 ② 각 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제1항의 수료학점이외에 창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임교수와 본대학 원장의 승인을 받아 취득하는 창업계획 인정학점(3학점)을 취득하여야 한다.
1. 자원봉사학점(3학점): 자원봉사를 총 30시간하여 취득한 학점을 말한다.
 2. 연구수련학점(9학점): 본 대학원과 협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연구수련 하여 취득한 학점을 말한다.
 3. 창업계획학점(3학점) : 창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임교수와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취득한 학점을 말한다.
 4. 어학능력 검정학점(3학점) : 공인기관에서 시행하는 인증시험을 말하며, 어학의 종류 및 합격기준 점수는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
- ③ 학위수여 요건에 필요한 어학능력 검정학점(3학점)과 창업계획 인정학점은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의 수료 최저학점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며, 제 17조에 의한 학기당 취득학점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.
- 제 16조 (과정의 수료) ① 수업연한을 이수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에게는 각각 석사학위과정, 박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.
 ② 각 학위과정의 수료시기는 매 해당학기 말로 한다.
 ③ 수료자에게는 수료증명서를 발급하고 학위취득시까지 연구생의 신분을 부여할 수 있으며, 연구생은 본 대학원 학생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- 제 17조 (학기당 취득학점) 본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은 학기당 9학점, 박사학위과정은 학기당 12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.

제18조 (학점부여기준) 본 대학원의 학점은 학기 당 16시간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

제19조 (성적평가) ① 학점이 부여되는 과목은 시험성적, 과제물, 출석상황 등을 평가하여 성적이 부여되며, 그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.

현 행							
등급	A ⁺	A ⁰	A ⁻	B ⁺	B ⁰	B ⁻	C ⁺
평점	4.3	4.0	3.7	3.3	3.0	2.7	2.3
점수	98-100	90-92	87-89	83-86	80-82	77-79	73-76
등급	C ⁰	C ⁻	F	I	P	NP	
평점	2.0	1.7	0	미완	합격	불합격	
점수	70-72	67-69	66이하				

- ② 제1항에서 정한 성적부여가 부적절한 과목의 경우에는 P(합격) 또는 NP(불합격)를 부여할 수 있다.
③ 성적평가 자료가 미비할 때에는 잠정적으로 I(미완)의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.

제20조 (학점인정 및 평점계산) ① C- 이상 또는 P를 받은 과목의 학점만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.
② P학점은 평점계산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.

- ③ 학위취득에 필요한 성적은 전과목 평균성적이 B0, 평균 평점이 3.0 이상이 되어야 한다.

제21조 (수강신청의 변경) 본 대학원 학생은 개강 후 2주 이내의 기간동안에 논문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수강신청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22조 (추가시험) ①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때에는 과목담당교수 및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추가시험원을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② 추가시험은 다음 학기 개시일 이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.

제23조 (재수강) 재수강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본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제24조 (타 대학원 학점인정) ① 본교의 대학원을 포함하여 국내·외의 다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사과정은 9학점, 박사과정은 12학점 범위안에서 본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의 경우에도 제12조의 수업연한은 단축되지 아니한다.

제25조 (추가이수과목) ① 본 대학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 대하여 제15조의 규정이 정하는 수료 학점 이외에 추가이수과목의 이수를 명할 수 있다

- ② 추가이수과목은 하위과정 또는 학부에 개설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.

- ③ 추가이수과목은 제19조 및 제20조에서 규정한 학점을 부여한다.

- ④ 추가이수과목은 제15조 및 제17조의 학기 당 취득학점 및 수료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
- ⑤ 박사과정의 추가이수과목은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타전공 졸업생 또는 특수대학원 졸업생에 적용되며, 동일계열 경우 6학점이상 21학점이내, 비동일계열은 12학점이상 21학점이내로 한다. 석사과정의 추가이수과목은 타전공 졸업생에 적용되며, 18 학점 이내로 한다.

- ⑥ 추가이수과목 지정과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제26조 (전공변경) ① 본 대학원 학생으로 1학기 내지 2학기를 수료한 자로서 전공변경을 원하는 자는 다음 학기 개시일로부터 4주 이내에 소정의 전공변경원을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② 전공변경 여부는 본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
제4장 학위수여

제27조 (학위 종류) 본 대학원은 정보통신공학석사 및 정보통신공학박사의 전문학위를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28조 (학위수여 요건) ① 본 대학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게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.

1.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한 자
 2. 소정의 졸업자격시험을 통과한 자
 3. 창업계획 인정학점을 이수한 자
 4. 학위논문 심사를 통과한 자
 5. 국내외 학회에 1회이상 발표한자
 6. 어학능력을 인정 받은자 다만, 어학능력은 공인기관에서 시행하는 인증시험을 응시하여,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정한 합격기준 점수이상을 받은 자 또는 어학능력 검정학점(3학점)을 이수한 자이다.
- ② 박사학위 수여자는 제 1항의 자격요건이외에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국내, 외학술지에 제 1저자로서 2편이상의 논문을 학위 과정중에 발표한자 또는 발표예정자이어야 한다. 단, SCI등재 논문지일 경우에는 1편이상으로 한다.
- ③ 제2항의 발표예정자라 함은 논문의 발표를 학술지 게재예정 증빙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.
- 제29조 (논문 지도교수의 선정) 각 전공의 주임교수는 입학 후 한 학기 이내에 각 전공의 전임교수 및 해당 학생과 협의 하에 논문지도교수를 배정하고 그 결과를 본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30조 (논문지도교수의 자격) ① 본대학원의 논문지도교수는 본교의 교수, 부교수, 조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강사 이상으로 한다.
- ② 교수업적평가 결과 중 최근 3개년간의 연평균 연구실적이 교원인사규정에 명시된 해당직급 연구실적 승진요건의 연평균치(연구실적 승진요건+직급별 최소 근무년수)의 1/2에 미치지 못한 교수는 논문지도교수가 될 수 없다.
- ③ 정년까지의 재직예정기간이 해당학기를 포함하여 석사과정의 경우 4학기 이내, 박사과정의 경우 6학기 이내인 교수는 본 대학원의 논문지도교수가 될 수 없다.
- ④ 신규임용 교수는 임용 후 1년간 제 2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⑤ 제 1항에 해당되지 않는 본교 비전임 교원은 제 1항의 전임교수와 공동 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.
- ⑥ 제 3항에 해당되는 교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, 본 대학원장은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조치를 취할 수 있다.
- 제31조 (학위심사 예비계획서 제출) ① 석사학위과정은 석사학위과정수료에 필요한 학점과 창업계획 인정학점을 취득하고 제28조 제1항 제6호의 어학능력을 인정받은 자로 소정양식의 학위예비계획서를 작성하여 논문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본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박사학위과정은 박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과 창업계획 인정학점을 취득하고, 제28조 제1항 제6호의 어학능력을 인정받고 제28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 소정양식의 학위심사예비계획서를 작성하여 논문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본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32조 (공개발표) ① 학위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는 학기에 그 논문의 내용을 공개 발표하여야 한다.
- ② 공개발표는 논문지도교수와 해당분야 산업체의 전문가를 포함한 3인 이상의 소속 전임교수가 참관하여야 한다. 단, 전임교수가 3인 미만이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논문지도교수가 위촉하는 교수가 참관할 수 있다.
- ③ 공개발표는 각 전공별로 주임교수 책임 하에 실시하며 모든 사람이 방청할 수 있어야 한다.
- ④ 공개발표의 실시 및 결과는 총괄하여 주임교수가 교학부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33조 (학위청구논문의 제출) 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.
1. 4학기 이상의 정규 등록을 마치고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자
 2. 수료학점의 평균 성적이 B0(3.0) 이상인 자
 3. 소정의 졸업자격시험을 통과한 자
 4. 창업계획 인정학점을 이수한 자
 5. 제28조 제1항 제6호의 어학능력을 인정받은 자
 6. 국내외 학회발표 1회 이상 및 공개발표를 마친 자
 7. 제28조 제2항 요건에 해당되는 학술지 게재 증명서 또는 예정 증빙서류(박사과정에 한함)를 갖춘 자

- ②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교학부에 제출하고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1. 학위논문제출 승인서 (소정양식)
 2. 성적증명서
 3. 심사용 논문 (석사학위과정 3부, 박사학위과정 5부)
- ③ 학위청구논문의 제출은 학기별로 하며 제출시기는 본 대학원장이 정한다.
- 제34조 (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회의 선정) ① 석사학위청구논문은 3인 이상, 박사학위청구논문은 5인 이상의 논문심사위원회로 논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.
- ② 논문심사위원회는 본교 전임교수 또는 국내·외 학자 중에서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본 대학원장이 위촉한다.
- ③ 논문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논문의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.
- 제35조 (학위논문의 심사) ① 학위논문의 심사는 논문 심사와 구술시험으로 한다.
- ② 학위논문 심사의 합격은 석사학위논문의 경우 논문심사위원회의 2/3,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논문심사위원회의 4/5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- ③ 논문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종료 후 심사의 결과를 정해진 기간 내에 본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④ 논문심사의 기준은 각 논문심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한다.
- 제36조 (학위수여의 결정) ① 본 대학원장은 논문심사 결과를 접수한 후 본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를 열어 학위수여 예정자에 대한 제28조의 학위수여 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.
- ② 본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37조 (학위수여의 취소) 총장은 학위를 받은 자가 논문의 대필, 표절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.

제5장 학생생활 및 장학금

- 제38조 (학생지도) 본 대학원의 학생은 경희대학교대학원학칙, 시행세칙 및 본 대학원 내규를 준수하고 본 대학원장, 교학부장, 주임교수 및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.
- 제39조 (휴학) ①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휴학할 수 있다.
- ② 휴학을 원하는 자는 휴학원을 작성하여 제1항의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논문지도교수, 교학부장을 경유하여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③ 본 대학원장은 학생이 학업과 연구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휴학을 명할 수 있다.
- ④ 휴학기간은 한 학기로 하되 그기간은 석사, 박사과정 각각 2개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 병역의무의 이행 등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휴학은 예외로 한다.
- 제40조 (복학)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된 자는 그 직후의 학기에 복학하여야 한다.
- 제41조 (자퇴)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소정양식의 자퇴원을 전공주임교수와 교학부장을 경유하여 본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본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제42조 (징계) ① 학생이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.
1. 경희대학교대학원학칙, 시행세칙 및 본 대학원 내규를 위반한 자
 2. 학업성적이 열등하여 학업 지속 가능성성이 없는 자
 3. 정당한 사유없이 1주 이상 학업 또는 연구에 임하지 아니한 자
 4. 면학질서를 저해한 자
 5. 기타 학생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
- ② 징계의 종류은 견책, 근신, 유기정학,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.
- ③ 견책, 근신, 유기정학 처분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이 행하고 무기정학과 제적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행한다.
- 제43조 (성적경고) ① 매 학기 성적의 평균평점이 2.0 미만인 자에게는 성적경고를 한다.
- ② 본 대학원장은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에게 다음 학기의 수강신청 학점 수를 제한할 수 있다.
- ③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에게는 그 직후 학기에 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- ④ 성적경고를 연속하여 2회 또는 재학 중 통산 3회 받은 자는 제적한다.
- 제44조 (장학금과 생활지원금)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, 본 대학원 빌전에 기여하는 자에게 장

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6장 연구원 및 연구생

- 제 45조 (연구원) ① 본 대학원의 각 전공에는 연구수행에 필요한 연구원을 둘 수 있다.
② 연구원은 박사학위 소지자인 박사후과정 연구원 (Post-Doc 연구원)과 학사 및 석사학위 소지자인 일반연구원으로 구분한다.
③ 박사후과정연구원은 주임교수와 본 대학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하며, 일반연구원은 주임 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본 대학원장이 임명한다.
④ 연구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⑤ 연구원 중 본교 출신자는 총연구원 수의 50% 이내로 제한한다.
⑥ 연구원의 인건비는 각 전공별 또는 교수별 연구비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⑦ 연구원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.
- 제 46조 (연구생) ① 본 대학원의 석·박사학위과정에서 연구 또는 수강을 원하는 자는 본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.
② 연구생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 및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.

제7장 학사운영위원회 및 직제

- 제 47조 (학사운영위원회) ① 본 대학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사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함)를 둔다.
② 위원회는 본 대학원 대학원장, 교학부장, 전공별 주임교수로 구성한다.
③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
④ 본 대학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 48조 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대학원위원회 심의사항의 사전 심의
 2.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
 3. 기타 본 대학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- 제 49조 (주임교수 및 전임교원) ① 본 대학원은 각 전공별로 1인의 주임교수를 둘 수 있다.
② 주임교수는 본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.
③ 본 대학원 전임교원의 책임강의시간은 주당 9시간으로 한다

제8장 연구수련

- 제 50조 (정의) 연구수련이란 본 대학원이 인정하는 국내·외의 정부, 기업, 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것을 말하며, 그 대상자는 연구 수련생이라 칭한다.
- 제 51조 (연구수련장학) ① 연구수련 해당업체로부터 장학금 수령에 따른 학생선발은 해당업체와의 협약서에 따른다.
② 협약서는 계약기간, 급여, 근무조건, 이행 규칙 등의 제반사항을 명시한다.

제9장 보 칙

- 제 52조 (준용규정) 본 내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희대학교학칙 또는 경희대학교대학원학칙 및 시행세칙을 준용한다.

부 칙

본 내규는 200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